

2026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01.01 시행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2025년 대비 평균 2.89% 인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 추가산정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20%추가	3,015,480	2,797,440	1,833,840	1,691,640	1,450,68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급여비용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부금(15%)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본부금(9%)	1,571	2,279	3,071	3,909	4,558	5,132	5,718	6,307
본부금(6%)	1,047	1,519	2,047	2,606	3,038	3,421	3,812	4,205

가족요양60분(20일)

분류	20일
급여비용	506,400
본부금(15%)	75,960
본부금(9%)	45,576
본부금(6%)	30,384

가족요양90분(31일)

	30일	31일
급여비용	1,023,600	1,057,720
본부금(15%)	153,540	158,658
본부금(9%)	92,124	95,195
본부금(6%)	61,416	63,463

방문목욕 (방문당)

분류	목욕차(차량)	목욕차(가정)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	88,990	80,230	50,100
본부금(15%)	13,349	12,035	7,515
본부금(9%)	8,009	7,221	4,509
본부금(6%)	5,339	4,814	3,006

방문요양 급여비용1 (방문당)

등급	급여비용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15%	9%	6%
60분이상	25,320	20	506,400	75,960	45,576	30,384
90분이상	34,120	30	1,023,600	153,540	92,124	61,416
90분이상	34,120	31	1,057,720	158,658	95,195	63,463
120분이상	43,430	25	1,085,750	162,863	97,718	65,145
150분이상	50,640	25	1,266,000	189,900	113,940	75,960
180분이상	57,020	25	1,425,500	213,825	128,295	85,530
210분이상	63,530	25	1,588,250	238,238	142,943	95,295
240분이상	70,080	25	1,752,000	262,800	157,680	105,120

본인부담율

수급자유형	재가 / 시설
일반대상자	15% / 20%
40%감경	9% / 12%
60%감경	6% / 8%
기초생활	0%

*본인부담율은 개인유형별로 상이함.

방문목욕 (방문당)

분류	목욕차(차량)	목욕차(가정)	차량 미이용	월 4회 적용	목욕차(차량)	목욕차(가정)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	88,990	80,230	50,100		355,960	320,920	200,400
본부금(15%)	13,349	12,035	7,515		53,394	48,138	30,060
본부금(9%)	8,009	7,221	4,509		32,036	28,883	18,036
본부금(6%)	5,339	4,814	3,006		21,358	19,255	12,024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06시 :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X)
- 일요일 : 30% 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 50% 가산

*(치매)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안내

구 분		의료기관
의사소견서	일반	61,040
	치매의사소견서	29,220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2025년 대비 평균 2.89% 인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 추가산정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20%추가	3,015,480	2,797,440	1,833,840	1,691,640	1,450,680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1일당)

시간	3시간이상	6시간이상	8시간이상	10시간이상	13시간초과
1등급	41,820	56,060	69,730	76,820	82,370
본부금(15%)	6,273	8,409	10,460	11,523	12,356
본부금(9%)	3,764	5,045	6,276	6,914	7,413
본부금(6%)	2,509	3,364	4,184	4,609	4,942
2등급	38,720	51,930	64,590	71,160	76,310
본부금(15%)	5,808	7,790	9,689	10,674	11,447
본부금(9%)	3,485	4,674	5,813	6,404	6,868
본부금(6%)	2,323	3,116	3,875	4,270	4,579
3등급	35,740	47,940	59,640	65,750	70,500
본부금(15%)	5,361	7,191	8,946	9,863	10,575
본부금(9%)	3,217	4,315	5,368	5,918	6,345
본부금(6%)	2,144	2,876	3,578	3,945	4,230
4등급	34,120	46,300	58,010	64,090	68,860
본부금(15%)	5,118	6,945	8,702	9,614	10,329
본부금(9%)	3,071	4,167	5,221	5,768	6,197
본부금(6%)	2,047	2,778	3,481	3,845	4,130
5등급	32,490	44,650	56,360	62,460	67,240
본부금(15%)	4,874	6,698	8,454	9,369	10,086
본부금(9%)	2,924	4,019	5,072	5,621	6,052
본부금(6%)	1,949	2,679	3,382	3,748	4,034
인지지원등급	32,490	44,650	56,360	56,360	56,360
본부금(15%)	4,874	6,698	8,454	8,454	8,454
본부금(9%)	2,924	4,019	5,072	5,072	5,072
본부금(6%)	1,949	2,679	3,382	3,382	3,382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 18시~22시 : 20% 가산 ○ 공휴일 : 30% 가산

주·야간보호 (1일당)

식재료비	간식비	월-토(26일)	총비급여
6,000	1,000	26	182,000

시설 비급여비용 (1일당)

식재료비	간식비	월-토(31일)	총비급여
9,000	1,000	31	310,000

본인부담율

수급자유형	재가 / 시설
일반대상자	15% / 20%
40%감경	9% / 12%
60%감경	6% / 8%
기초생활	0%

*본인부담율은 개인유형별로 상이함.

시설급여비용(1일당) -노인요양시설 (2.3 : 1)

31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요양시설	88,520	82,120	77,540
월금액(31일)	2,744,120	2,545,720	2,403,740
본부금(20%)	548,824	509,144	480,748
본부금(12%)	329,294	305,486	288,449
본부금(8%)	219,530	203,658	192,299

시설급여비용(1일당) -노인요양시설 (2.1 : 1)

31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요양시설	93,070	86,340	81,540
월금액(31일)	2,885,170	2,676,540	2,527,740
본부금(20%)	577,034	535,308	505,548
본부금(12%)	346,220	321,185	303,329
본부금(8%)	230,814	214,123	202,219

등급구성

구분	이용가능 급여종류
1등급	재가+시설
2등급	
3등급	재가*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 수발곤란한 경우
-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 이용불가능한 경우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
총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등급별로
월 한도액 적용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

○요양, 간호, 주야간 :
야간 시간대, 일요일, 공휴일 이용 시
급여비용의 20% ~ 50%의 가산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증가